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22]

사고의 통보방법 등(제74조제2항 관련)

1. 사고 종류별 통보의 방법 및 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.

사고 종류	통보방법	통보기한	
		속보	상보
가. 사람이 사망한 사고	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(이하 "속보"라 한 다) 및 서면으로 제출하 는 상세한 통보(이하 " 상보"라 한다)	즉시	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
나. 사람이 부상하거나 중 독된 사고	속보와 상보	즉시	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
다.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이나 화재사고(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 다)	속보	즉시	
라.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가스의 공 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(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	속보	즉시	
마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 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(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 외한다)	속보	즉시	

비고

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5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면 상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- 2. 제1호의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.
- 가. 통보자의 소속, 직위, 성명 및 연락처

- 나. 사고 발생 일시
- 다. 사고 발생 장소
- 라. 사고내용
- 마. 시설현황
- 바. 피해현황(인명과 재산)